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8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심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병도,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서울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생 건강증진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교육 지원 사업
2.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 사업
3. 구강 보건 관리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 센터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